

## 자동차의 종류

구분	정의	유형별 분류		규모별 분류				
		명칭	내용	분류기준	명칭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일반형	2~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배기량	1,000cc미만	1,600cc미만	1,600cc이상 2,000cc미만	2,000cc이상
		승용겸 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크기 ① 길이 ② 너비 ③ 높이	① 3.6m이하 ② 1.6m이하 ③ 2.0m이하	① 4.7m이하 ② 1.7m이하 ③ 2.0m이하	①, ②, ③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①, ②, ③ 모두가 소형을 초과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 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1 참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일반형	주 목적이 여객 운송용인 것	승차정원 (배기량)	1,000cc미만	15인 이하	16인 이상 35인 이하	36인 이상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크기 ① 길이 ② 너비 ③ 높이	① 3.6m이하 ② 1.6m이하 ③ 2.0m이하	① 4.7m이하 ② 1.7m이하 ③ 2.0m이하	①, ②, ③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전장 9m 미만	①, ②, ③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전장 9m 이상
화물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m <sup>2</sup>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 (1인당 65kg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2 참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최대적재량 (배기량)	1,000cc미만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톤 이하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크기 ① 길이 ② 너비 ③ 높이	① 3.6m이하 ② 1.6m이하 ③ 2.0m이하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총중량 (배기량)	1,000cc미만	총중량 3.5톤 이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크기 ① 길이 ② 너비 ③ 높이	① 3.6m이하 ② 1.6m이하 ③ 2.0m이하			
		특수 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의 것					

· 주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별표1(자동차의 종류)

2. 이륜차는 제외 3.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인승구분은 '01. 1. 1일부터 적용

4. 소형 및 중형 규모별 분류기준 변경(1,500cc → 1,600cc) : '09. 4. 8일부터 시행

※ 1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2 : 가. 화물적재공간의 뒷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